낚금법 개정 국회청원

10월 22일까지 60일 연장

서성모 편집장

지난 5월 26일 국회에 회부된 낚금법 개정 국회청원(이하 국회청원)이 심의만료일인 8월 23일까지 처리되지 못해 10월 22일까지 60일 연장되었다. 국회는 지난 9월 6일 국회의장 직함으로 처리된 '낚시행위 제한 근거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기간 연장 통지' 제목의 공문을 청원인인 유원기 씨에게 보냈다. 공문의 내용은 '「국회법」 제1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보다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한 "낚시행위 제한 근거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6호)의 심사기간을 2021. 10. 22.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이다.

90일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국회에 낚시계 부글부글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회부된 청원은 소관위원회가 90일 내에 심의해야 한다. 국회청원 심의만료일은 8월 23일이었고 시한이 지나자 연장된 것이다. 90일간 심의하지 못한 국회청원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심의를 못한 이유를 보고하고 최대 60일까지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국회청원 심의기간이 연장됐다는 소식을 접한 낚시계는 한 마디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90일간 국회가 청원과 관련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청원은 낚시금지 조항이 있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의를 맡게 되었지만 8월 23일까지 관련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깜깜이 국회로 일관했다. 낚시계는 90일 내에 국회청원을 심의하고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며 국회의원 댓글달기운동,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왔지만 결국 심의만료일인 8월 23일을 넘기게 됐다.

연장 소식을 접한 낚시인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회청원은 국회의원들 생색내기 보여주기 정책일 뿐인가' '선거철이 돼가니 이권에나 힘쓰고 민생은 나 몰라라 하는 국회의원들' '당선만 되면 목에 힘주고 국민들 무시하는 국회' 등 국회를 성토하고 비난하는 글들을 올렸다.

국토위 등 상임위원회 임기 끝나 위원들 대폭 교체

낚시계가 국회청원 심의만료일인 8월 23일에 맞춰 총력을 다한 이유는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총선에 이어 21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다. 그에 따라 국회청원을 심의할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대폭 교체됐다. 국회청원이 회부될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으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떠나고 이헌승(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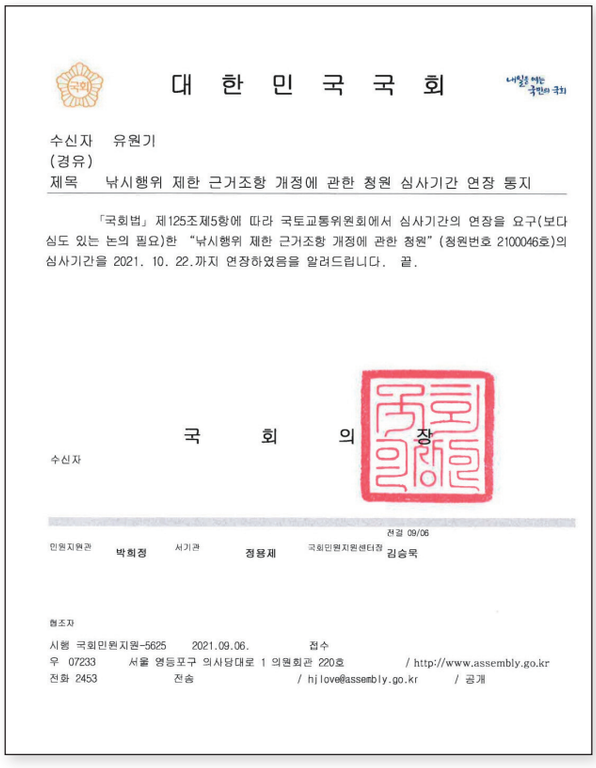

대 한 민 국 국 회

수신자 유원기
(경유)
제목 낚시행위 제한 근거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기간 연장 통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보다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한 "낚시행위 제한 근거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6호)의 심사기간을 2021. 10. 22.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 회 의 장

수신자

전결 09/06

인원지원관 박희정 서기관 정용제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승묵

협조자

시행 국회민원지원-5625 2021.09.06. 접수
우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220호 / http://www.assembly.go.kr
전화 2453 전송 / hjlove@assembly.go.kr / 공개

국회가 낚금법 개정 청원인 유원기 씨에게 보낸 공문. 국회의장 직함의 공문엔 낚금법 개정 국회청원이 심의만료일인 8월 23일을 넘김에 따라 10월 22일까지 심의기간을 60일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2-283p 서-낚금법 개정1(심의연장).indd 282 2021-09-13 오후 8:20:49

10월 22일까지 심의 못하면 재연장

Q 낚금법 개정 국회청원이 10월 22일 내에 심의를 받지 못하면 폐기되는 것인가?

A 아니다. 10월 22일까지 심사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의를 하지 못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연장된다. 국회에 회부된 청원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125조 5항과 6항에 따르면 '⑤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국회 홈페이지에 청원 현황을 보면 150일, 5개월 이상 계류된 청원이 8월 23일 현재 '포괄적 처벌 금지 반대에 대한 청원'을 포함해 8건이다. 모두 연장 처리했다가 심의를 하지 못해 재연장한 청원들이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청원은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Q 국회청원을 통해 법이 개정된 사례가 있는가?

A 국회청원을 통해 법이 개정된 사례가 있다. 20대 국회에선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n번방사건' 청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해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시에 이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 적잖은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n번방사건'과 관련해 세 건의 청원이 국회에 회부됐고 이를 통해서 성폭력처벌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됐고 현재 시행 중이다.

21대 국회에도 2020년 9월에 회부된 국회청원을 통해 법이 개정된 사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으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2021년 1월 26일 공포와 함께 그 다음날 시행됐다.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Q 국회청원 외 낚금법을 개정할 방법은 없는가?

A 국회청원과 별개로 국회의원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를 하면 된다. 그 국회의원이 낚금법 관련 소관위원회 의원일 필요도 없다. 현재 국회청원을 통해 개정하려는 법은 낚시금지 조항이 있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이다. 이 법과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의 소관위원회를 맡고 있고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로 정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중 낚금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어 동료 국회의원을 설득해 10인 이상만 되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이다. 발의한 법안은 하천법일 경우 국토교통위원회, 물환경보전법일 경우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를 거쳐 의결을 통해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국회청원의 용도다. 국회청원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국회의 제도일 뿐 국회청원 자체가 법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회청원 심의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청원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법 발의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적어 폐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낚시계는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낚금법 개정에 뜻이 있는 위원들이 나서서 청원 주체인 청원인, 낚시인, 낚시단체 등을 국회에 불러 논의를 하고 법안을 발의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현재의 상황만 본다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낚시계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든 아니든 국회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낚금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낚시계가 이룬 10만 국회청원은 낚금법을 개정할 확실한 명분이 된다.

282-283p 서-낚금법 개정1(심의연장).indd 283 2021-09-13 오후 8:20:50